

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- 옥외광고물등관리법(2001. 7. 24) 및 동법시행령(2001. 11. 22),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(2002. 4. 24)등의 개정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각종 사항등을 구체적으로 규정
- 종전 광고물관리 업무가 시장 권한으로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사무 위임되어 처리 하던 것을 동 법령에서 광고물허가 사항 권한등을 일선 구·군에 이양됨에 따라 시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대부분 위임 받아 새로이 자치구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경관의 향상 및 시민생활 환경을 개선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사하구광고물관리 심의 위원회(소위원회)를 두어 일정 규정 이상의 광고물 및 특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시 사전 구 광고물관리 심의 위원회의 심의토록 규정 (구조례안제3조 및 제4조)
-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출석위원 수당과 여비 (구조례안제5조)
- 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 (구조례안제6조~제8조)
- 현수막 지정 계시대의 위탁 (구조례안 제9조)
-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(구조례안제11조~제13조)
- 허가 또는 신고시 수수료 (구조례안제14조)
-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 및 징수 절차 (구조례안제15조)
-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 (구조례안제16조)

3. 관련법령

- 가.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6조 (권한의 위임)
- 나.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5조 (권한의 위임)

4. 검토의견

- 이번 조례 제정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01. 7. 24일과 같은해 11. 24일자로 각각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광고물관리 업무가 시장 권한으로서 시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사무위임되어 처리하던 것을 구청장에게 이양되어
-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새로이 구 조례로 제정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게시시설설치 유지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도시 경관의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써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맞게 제정하였으므로 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됨.

2002. 7.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삼립